

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 적 : 4,763㎡→5,790㎡(증 1,027㎡)</li> <li>• 건축물 : 없음</li> <li>•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 지구</li> </ul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'91.2.11. 구역 지정되었다가 '93.9.25. 구역을 변경하였던 동작구 사당동 105-14번지 일대 사당 제6주택개발구역 지정면적 4,763㎡에 1,027㎡를 추가하여 5,790㎡로 구역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.</p> <p>○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인은 이 구역과 인접된 사당 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동작구에 무상 귀속되어 기부채납된 공공공지 298㎡를 동작구에서 공용의 청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, 이 토지가 장방형으로 생겨 청사 신축지로서 적당치 않아 사당 6구역에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원만하게 확보하도록</p> <p>○동작구 소유인 공공공지를 사당 6구역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며, 사업계획 결정시, 이 구역 북측으로 4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를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이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활용을 위하여 변경안대로 동의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구(일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람공고 중 의견접수 : 없음</li> </ul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(안)은 강남구 도곡동 산 34-8의 임야 195㎡는 인접 도곡동 산 32-1 등 임야와 연결된 도곡근린공원 시설이었으나 중간으로 6m도로가 관통됨으로써 임야 195㎡는 면적이 너무 좁아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워 이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,</p> <p>○대신 같은 공원용지에 인접된 도곡동 150번지의 192㎡와 도곡동 151-1의 65㎡ 및 도곡동 191번지 58㎡를 도곡 근린공원에 편입하여 당초 공원시설 249,987㎡를 250,107㎡(120㎡ 증)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도곡 근린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변경결정안대로 공원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의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57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57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58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58
의안 번호	57				
의안 번호	58				
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강남구 도곡동 150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 적 : 249,987㎡→250,107㎡(증 120㎡)</li> <li>•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</li> </ul>	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성북구 정릉동 산 1-2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결정내용</li> <li>-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학 : 36,355㎡</li> <li>- 고려중·고교 : 31,302㎡</li> <li>• 공람공고 중 의견접수 : 없음</li> </ul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은 성북구 정릉동 산 1-2 일대 36,355㎡의 고려대병설 보건전문대학과 같은 지번내에 있는 고려중·고등학교 부지 31,302㎡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</p> <p>○본 학교 등은 전문대학은 1963년에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고, 중·고</p>				

<p>등학교는 1968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사전 도시계획상 학교로서 시설결정을 받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으나,</p> <p>○현재 학교가 현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황에 맞도록 시에서 제출한 결정안대로 학교시설을 결정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※중·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학교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각각 24%, 71%가 초과되고 있음.</p>	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
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<p>의안 번호 66</p>
<p>의안 번호 60</p>	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논현동 129 일대 ○내용 · 용도지역 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(69,9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 (69,900㎡)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남구 논현동 129 일대 69,900㎡에 대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강남구에서 논현생활권 중심지로 결정하여 본 지역을 중심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○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 생활권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지구지정은 타당한 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
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내용 · 자연녹지지역(고덕동 215-1) → 일반주거지역 603.1㎡ · 일반주거지역(고덕동 213, 213-1) → 자연녹지지역 603.1㎡ ·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주거지역, 공원 · 주민의견 청취 결과 : 없음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강동구 고덕동 213-1에 연대하여 있는 고덕 제1근린공원 안에 있는 기존 교회를 공원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써 근린공원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, ○공원 안에 있는 교회 이적지인 고덕동 213, 213-1의 일반주거지역(603.1㎡)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, 교회가 이전할 현재의 자연녹지 고덕동 215-1(603.1㎡)을 면적 변경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본 변경결정안은 근린공원 관리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	<p>5. 심사결과 시 결정 및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
<p>의안 번호 70</p>	<p>의안 번호 70</p>
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삼성동 74 일대 ○내용</p>	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삼성동 74 일대 ○내용</p>